

#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01. 12. 10 ] 조례 제2599호

전문개정 2002. 12. 10 조례 제2623호  
전문개정 2006. 5. 30 조례 제2753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6. 12. 21 조례 제3375호  
일부개정 2018. 10. 30 조례 제3507호  
일부개정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비의 지급범위, 지급금액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예산지원)** 제7조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2. 자치위원의 워크숍 또는 교육 등 관련 경비
3.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

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0조의2(수강료의 징수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강료를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강료 중 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려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의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여 남은 월의 수강료를 환불한다.

⑥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흠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세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군수가 지원하는 예산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면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명이내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면장은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① 읍·면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한 날부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제17조의3(위원 등의 위촉)**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2.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3. 해당 읍·면의 기관단체장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자치위원 선정 순위의 공정성·객관성을 검토하고 지역별, 성별, 계층별로 종합 판단하여 주민자치위원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사무국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사무국장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기진작)**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박람회 참여 및 국내 선진지 견학
2. 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5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천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읍·면의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읍·면 위원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제2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월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2(사기진작 등)** 군수는 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워크숍 및 국내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3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2. 21 조례 제337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0 조례 제3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무료 또는 읍·면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2. 수 강 료

구 분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금 액 (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실습 재료비 본인 부담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
	7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
	9시간 이하	30,000원 이하	”
생활체육	5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
	5시간 초과	35,000원 이하	”

※ 감면기준 및 감면율

-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감 면 율 : 100%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공고 제    호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개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천군 ○  
○읍·면 주민자치센터        년도(상·하)반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인)

수    입		지    출		비    고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잔    액				